

주파수이용권의 양수·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(제118조제1호 관련)

|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|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    | 2차 위반 |
|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| 법 제14조제8항 제1호 | 승인 취소      |       |
| 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     | 법 제14조제8항 제3호 | 시정명령       | 승인 취소 |
| 3.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    | 법 제14조제8항 제2호 | 시정명령       | 승인 취소 |
| 4. 법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14조제8항 제4호 | 승인 취소      |       |